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309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문대림 · 김한규 · 이기현
임호선 · 김동아 · 송옥주
문금주 · 이상식 · 주철현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보건·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 여부”를 “지정 여부”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에”를 “지정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을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증을 받”을 “지정을 받”으로, “인증 효과”를 “지정 효과”로, “인증 갱신”을 “지정을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각

각 “지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인증이 취소”를 “지정이 취소”로, “인증이 취소된”을 “지정이 취소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증의 승계 등)”을 “(지정의 승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증의 취소)”를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을 받”을 “지정을 받”으로, “인증을 취소”를 “지정을 취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자

제30조제3항제4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u>인증</u>을 받은 자를 말한다.</p> <p>4의2.·5. (생략)</p>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u>인증</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u>인증</u>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들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u>인증</u>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p> |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지정</u>----- -----.</p> <p>4의2.·5. (현행과 같음)</p>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u>지정</u>) ① ----- ----- ----- <u>지정</u>----- -----.</p> <p>② ----- <u>지정</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

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19. (생략)
- ②·③ (생략)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

----- 지정 여부-----

----- 지정서-----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
----- 지정 -----

-----.

- 1. ~ 19.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의 표시) ① -----
----- 지정 -----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
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
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
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
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
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
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
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지정의 -----
-----.

② ----- 지
정을 -----

----- 지정서-----
-----.

③ ----- 지
정을 ----- 지정에 -

-----.

제11조(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

② 지정을 받-----

----- 지정 효과-----

----- 지정을 갱신-----.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략)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③ 지정-----

-----.

제12조(결격사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지정이 취소-----

----- 지정이 취소된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정의 승계 등) ① -----
----- 지정-----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 5.·6. (생략)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자

② -----
----- 지정 -----

-----.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지정 -----

- 5.·6. (현행과 같음)

제39조(청문) -----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 ~ 5. (생략)

제41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 -----
----- 지정 -----
2. ~ 5.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삭제>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 지정 -----
